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해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조서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기 때문에 조서 내용대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 지급명령

-적은 비용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

구술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제도라고 한다. 채권자로 하여금 일반의 소송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 유가 증권에 한정돼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채권의 액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복잡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있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다고 한다.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한다.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부터 다시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위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소멸시효

-일정기간 경과 후 이뤄지는 권리의 소멸

시효란 간단히 말해 시간의 경과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한다.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위법한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이 그 돈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라고 한다. 다만 상사로 인해 생긴 채권은 5년이라고 한다.

소비자 거래로 인한 채권 등은 3년이며 숙박업소의 숙박료와 입장료 등은 1년이라고 한다.

◆ 구상권

-빚 갚아준 사람이 돈을 받아 낼 권리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반환청구권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빚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빚을 진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갔거나 사업이 망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한테서 돈을 받아 간다. 이 때 보증인은 갚은 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원래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다.